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

충청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704
----------	-----

2021. 4. 30.(금)
건설환경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 의 자 : 서 동 학 의원 등 7인
- 나. 발의일자 : 2021년 4월 13일
- 다. 회부일자 : 2021년 4월 16일
- 라. 상정일자 : 2021년 4월 22일
 -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
- 마. 주요내용
 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서동학 의원)

- 가. 제안이유
 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상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(안 제1조, 안 제2조)
-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안전 환경 지원 대상 및 지원의 범위를 규정함(안 제4조, 안 제5조)
- 기초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안전 환경 지원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- 안전 환경 지원 내용 및 절차 등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환경소방전문위원 노형우)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어린이, 노인,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상위법령인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성별, 연령, 지역계층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고 도내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목적 및 필요성이 인정됨.

-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 -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.
 - 안 제3조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 확보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.
 - 안 제4조 및 제5조는 안전 환경 지원 대상 및 지원의 범위를 규정함.
 - 안 제6조는 기초자치단체 또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업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 - 안 제7조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- 입법예고('21. 4. 2.~'21. 4. 8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- 관련부서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“수용”하여 추진이 가능한 사항임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라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」 등

충청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재난”이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.
2. “안전취약계층”이란 어린이, 노인,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성별, 연령, 지역계층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고,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도내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시장·군수와 협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안전 환경 지원 대상) 도지사는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13세 미만 어린이
2. 65세 이상 노인
3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4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, 소년·소녀가장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
5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
6.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에 취약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5조(안전 환경 지원 범위) 제4조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방·가스·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

2.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

3.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

4.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5.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업무의 위임 및 위탁) ①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·군수 또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 시장·군수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가 시장·군수 또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에게 위임·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.

제7조(홍보) 도지사는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31조의2(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) 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, 범위,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은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④ 행정안전부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다.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

제39조의2(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13세 미만의 어린이
2. 65세 이상의 노인
3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
4. 그 밖에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·가스·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
2.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
3.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
4.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.

□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충청북도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 환경 지원

2. 비용발생 요인

-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 장비 및 용품 제공
 - 소방본부 「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업」은 취약계층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및 유지보수
-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(강사비용)
 - 안전정책과 「찾아가는 안전문화교육 사업」은 취약계층 교육 지원으로 강사비용 발생

3. 관련조문: 안전 환경 지원 사업(안 제5조)

4. 비용추계 결과

- 가. 추계의 전제 :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(연도별 물가상승률 등은 배제함)
- 나. 추계 결과 : 5년간 495,000천원 소요
- 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
5. 연도별 비용추계표

(단위:천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
세 출	495,000	99,000	99,000	99,000	99,000	99,000
재난대비 안전장비 제공	435,000	87,000	87,000	87,000	87,000	87,000
찾아가는 안전문화교육사업 강사료	60,000	12,000	12,000	12,000	12,000	12,000